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수산물부

금년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와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개)에 대하여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원산지 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하여,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 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

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 (이하 수입산 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 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 ▶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 '수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하는 대답하는 경우
- ▶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 을 주는 경우

이외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범위내였으나 200만원 범위 내로 확대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통신판매의 경우 종전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통신판매의 범위 설정(안 제2조)

1) 통신판매의 범위를 비대면(非對面) 형태로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명확히 함.

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선정근거 마련(안 제3조)

- 1)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2)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3)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쇠고기·돼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지고기·닭고기(배달용 닭고기 포함)·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및 밥류·배추김치류

다.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영업자 근거마련(안 제4조)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함.

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근거마련(안 제5조)

1)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와 특정 원료농수산물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2)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시대상 원료 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안 제6조)

1) 국산 농수산물·가공품 :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채취·사육(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또

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단,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원양산” 등으로 표시)

2) 수입산 농수산물·가공품 : 대외무역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바. 원산지 조사 및 거짓표시자 처분·공표 근거마련(안 제7조·제8조)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에 대한 방법·시기·업종·규모·대상품목 선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자체계획을 수립
2) 거짓표시자에 대한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주소, 위반처분내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

사.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9조)

1)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아.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제11조)

- 1) 원산지 표시 조사,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
- 2) 원산지 미표시자 및 표시방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시행규칙(안)〉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2조)

- 1) 국산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산” 또는 “국내산”이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등으로 표시, 수입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 2)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3) 국산수산물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포장한 경우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

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3조)

- 1)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지역)의 원료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
- 2)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이나 “원양산”으로 표시

다. 식품접객업 등의 조리음식 및 통신판매 농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설정(안 제6조) 